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1.1.5, 2021.4.20.) 및 시행(개정 공포 후 1년) 관련하여, 전문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대상 지정 및 소방기술자 경력인정범위 등의 개선을 통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 공사기간 4개월 이내인 경우 :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및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및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하는 경우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frac{\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text{지급주기(월수)}} \times 2$$

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운영기준(안 제24조의2, 별표4의7 신설)

- 전국 4개소 이상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가능한 교육·훈련장 확보
- 전담조직과 인력,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 확보,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35시간 이상 교육훈련실시 하되, 25%이상은 실습교육

다. 소방기술자 자격·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 등 개선(안 별표4의2 개정)

- 소방공무원의 경력 인정범위 개선
 - 건축허가 동의업무, 소방시설점검, 소방특별조사 업무
 - 위험물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검정업무 등
- 소방관련 특수목적·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학·경력 인정범위 마련
 - 소방기술자 인정 자격수첩 발급 대상 포함
 - 졸업 후 경력에 따라 소방기술자 고급(13년), 중급(10년), 초급(3년) 등급 취득
 - 졸업 후 경력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 초급(4년) 등급 취득
- 소방공사 감리원 중급감리원 기술등급 자격 개선
 - 초급감리원 취득 후 5년이상 감리업 업무 수행 시 등급 취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4제5

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frac{\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text{지급주기(월수)}} \times 2$$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보증 및 담보의 제공은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이행측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측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23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6호의4서식에 따라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참여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 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교육실적, 자격 사항 및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말한다)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의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양성·인정교육 훈련 수료여부를 확인하고”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실시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의7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운영계획
 2. 교육과정 및 과목
 3. 교육방법
 4. 그 밖에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소방기술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교육이수사항을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기술 인정자격 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방기술 인정자격 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에 관한 적용례)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지정 받은기관은 2022년 2월 말일까지 별표4의7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운영기준을 갖추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해위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라.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	법 제9조	영업정지	등록취소	

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개월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사.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아.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자. 법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 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 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타. 법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	법 제9조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파.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더. 법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머.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서.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어.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저. 법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처.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커.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터.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피.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노.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도.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로.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2)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 3)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 4)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 5)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6)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 7)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 8)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9)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10)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부터 6)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하 “소방 관련 업무”라 한다)”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완공검사 등 건축허가 동의 등의 업무

나) 소방시설점검, 소방특별조사 업무

다) 위험물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소방용기계기구 검정업무 등 소방시설과 관련 업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6)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나목 및 다목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경력을 인정

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구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 · 학위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	○	
	·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	×	
	·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경력	· 소방업체에서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시설설계업	전문	○	○
		소방시설공사업	일반전기	×	○
		소방공사감리업	일반기계	○	×
		소방시설관리업		○	○
	·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완공검사 등 건축허가 동의 등의 업무 나) 소방시설점검, 소방특별조사 업무 다) 위험물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소방용기계기구 검정업무 등 소방시설과 관련 업무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및 협회에서 소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	○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로 선임되거나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

소방업체 구분	기술 능력	자격·학력·경력인정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 분야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제1호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계·전기분야 공통 가. 「 고등교육법 」 제2조제1호부 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 고등교육법 」 제2조제1 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 3)부터 6)까지를 졸업한 사 람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 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전기 분야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가목1) 및 8)의 자격을 취 득한 사람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 력이 있는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 고등교육법 」 제2조제1 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 2)를 졸업한 사람	라. 5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 는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 로 1년 이상 같은 호 다목에 해 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 90조 및 제91조에 해당하는 학 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

		는 학과(이하 “고등학교 소방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사람
소방시설 관 리 업	보조 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경력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1년 이상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7)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등 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 급 기술자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

	•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 소방시설관리사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 · 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등 급	학력 · 경력자	경력자
특 급 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을 졸업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 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공통기준 제1호나목의 학과의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한자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공통기준 제1호나목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구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감리원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감리업에서 기계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감리업에서 전기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제1호나목3)부터 6)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운영기준(제24조의2제1항)

1. 지정요건

- 가. 전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1개 이상) 4개 이상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훈련장을 갖출 것
- 나. 소방기술자에 대한 양성·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 다.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을 갖출 것
- 라. 교육훈련의 신청·수료, 성과측정, 경력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할 것

2. 운영기준

교육과정	교육시간	비고
가. 별표4의2제2호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구분에 따른 자격인정과정	35시간 이상	보조인력
나. 별표 4의2제3호가목의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 등급 인정과정	35시간 이상	초급·중급·고급·특급
다. 별표 4의2제3호나목의 소방공사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 등급 인정과정	35시간 이상	초급·중급·고급·특급
라. 소방기술자 또는 소방공사 감리원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가 상위등급으로 인정받는 과정	35시간 이상	중급·고급·특급
마. 법 제26조의2에 의한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는 과정	35시간 이상 70시간 이하	설계, 감리

비고

1. 교육시간의 25%이상은 실습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마목의 교육과정은 이러닝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법 제28조제2항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동시에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목의 교육은 면제하고, 나목 또는 다목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제2호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이수일자는 제2호 교육과정을 수료한 일자로 한다.
4.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퇴직(예정)자 교육과정 또는 소방시설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통되는 과목, 유사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4만원
 - 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분야별 2만원
 - 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4만원
 -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2만원
 - 마.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4만원
 - 바. 일반 소방공사감리업: 분야별 2만원
 - 사. 방염처리업: 업종별 4만원
2.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별 각각 1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2만원
4.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7.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8.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 알림
기 관 명**

수신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경유)

제 목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용역명								
2. 소방공사 감리업자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용역개요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², 바닥면적	m², 개동	
	대지면적		m²		연면적	m² 건축면적 m²		
4. 계약내용	○형태: 상주감리[] 일반감리[] ○용역비: 천원(VAT 포함) ※ 소방공사비 : 천원(VAT 포함)							
5. 참여 감리원	직무	성명	생년 월일	등급	경력 ¹⁾		교육실적 ²⁾	자격사항 ³⁾
					소방분야 경력	참여분야 경력		
	책임							
	보조							
	보조							

- 1) 각 분야별로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단위 : 년)
2)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은 기간을 기재(단위 : 주)
3)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중 취득한 자격을 기재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3(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4 제5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u> <u>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u> <u>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u> <u>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u>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u>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u>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 \times \frac{\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2}$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보증 및 담보의 제공은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보증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이행촉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
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
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
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6호의4서식에 따
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
가 참여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 감
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교육
실적, 자격사항 및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말한다)평가점수와 동
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

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
 ②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

② -----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양성 · 인정교육 훈련 수료여부를 확인하고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 인정 교육훈련 실시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의7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 · 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운영계획

2. 교육과정 및 과목

3. 교육방법

4. 그 밖에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③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훈련기관은 소방기술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교육이수사항을 기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